

수수료 금액표(제131조제1항 관련)

항목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금 액 (단위 : 원)
1.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제139조제1호	5,000
2.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신청	제139조제2호	3,000
3.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허가의 신청	제139조제3호	3,000
4. 교통안전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제139조제4호	50,000
5. 삭제 <2018. 9. 28.>		
6. 삭제 <2018. 9. 28.>		
7.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139조제7호	8,500
8.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	제139조제8호	50,000
9. 삭제 <2018. 9. 28.>		
10. 삭제 <2018. 9. 28.>		